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-6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2016년 6월 27일자로 합정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(안 제2조 관련 별표)
- “동교로8길 58” 에서 “월드컵로5길 11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6. 7. 7. ~ 2016. 7. 27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6. 8. 16.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합정동의 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합 정 동	월드컵로5길 11(합정동)
-------	--------------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별표의 개정규정(합정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)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
[별표] <u>동주민센터 설치, 명칭과 소재지</u> 관할구역(제2조 관련)				[별표] <u>동주민센터 설치, 명칭과 소재지</u> 관할구역(제2조 관련)					
구 분	동주민 센터 (명칭)	동주민센터 소재지	법정동관할		구 분	동주민 센터 (명칭)	동주민센터 소재지	법정동관할	
			전지역 관할	일부지역 관할				전지역 관할	일부지역 관할
마 포 구	합정동	<u>동교로8길 58</u> (합정동)	(생략)		마 포 구	합정동	<u>월드컵로5길 11</u> (합정동)	(현행과 같음)	